

2001年度第2回忠清北道追加更正豫算案

檢 討 報 告 書

2001. 9.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專 門 委 員

I. 2001年度 第2回 追加更正 豫算案 編成方向

1. 豫算案 編成方向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채무상환, 재해복구 지원
- 정부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의존재원 조정 등 여건 변동에 의한 추가 소요액 계상
- 건전재정을 위한 경상예산 증액 억제
-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해결에 중점 편성

2. 豫算案 編成基準

가. 세입예산

- 중소기업자금운용 상환금 등 세외수입 증액계상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부처의 추가 내시에 의해 계상

나. 세출예산

-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계상
- 중앙지원 및 비도지정 관련 사업비 추가계상
- 도 역점시책 사업 및 시·군 현안과 주민숙원사업비 추가 계상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 조정

II. 2001年度 第2回 追加更正 豫算案의 主要内容

1. 豫算總則

(단위:천원)

구 분	기정예산	제2회추경	비 고
제1조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	31,657,000	35,238,000	
○ 일반회계	29,783,000	32,552,000	
○ 기타특별회계	1,874,000	2,686,000	
- 충북과학대학운영	122,000	149,000	
- 의료보호기금운영	1,370,000	2,155,000	
-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	308,000	308,000	
- 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74,000	74,000	
제3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			
○ 일반회계	3,800,000	3,800,000	
제5조 예비비			
○ 일반회계	10,797,109	11,513,483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제1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	164,129,542	218,503,485	
제2조 업무예정량			
○ 지방채발행 계획액	29,400,000	42,000,000	
○ 지방채상환원리금 총액	60,290,000	60,290,720	
○ 기금융자계획 총액	80,000,000	80,000,000	
○ 융자금 회수 총액	36,805,541	36,805,541	
제5조 자본적수입 및 지출	29,400,000	42,000,000	
제6조 예산전용금지 과목(부채상환금)	60,290,720	60,290,720	

2. 歲入歲出豫算

가. 예산안 규모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다음표와 같음

(단위:천원, %)

구 분	기정예산	제2회 추경	증 감	%
합 계	1,248,055,736	1,421,822,310	173,766,574	13.9
○ 일반회계	992,764,405	1,085,038,230	92,273,825	9.3
○ 특별회계	255,291,331	336,784,080	81,492,749	31.9
- 공기업특별회계	192,861,263	247,235,206	54,373,943	28.2
- 기타특별회계	62,430,068	89,548,874	27,118,806	43.4

나. 일반회계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보다 9.3% 증가(922억 7,382만 5천원)한 1조 850억 3,823만원
으로 편성되었음(표1 참조)

- 세외수입은 18.2% 증가(119억 7,855만원)한 784억 4,211만 3천원으로
사용료 수입 39.5%, 잡수입 102.8% 증가한데 기인함.
- 지방교부세는 20.2% 증가(418억 3,152만 6천원) 하였으며
보조금은 11.1% 증가 하였음.

〈표1〉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천원, %)

구 분	기정예산	제2회 추정	증 감	
			금 액	비 율
○ 지방세	251,417,000	251,417,000	-	-
- 보통세	158,756,000	158,756,000	-	-
- 목적세	88,305,000	88,305,000	-	-
- 과년도수입	4,356,000	4,356,000	-	-
○ 세외수입	66,463,563	78,442,113	11,978,550	18.2
- 경상적세외수입	15,646,597	16,501,497	854,900	5.5
• 재산임대수입	219,005	219,005	-	-
• 사용료수입	1,484,384	2,070,384	586,000	39.5
• 수수료수입	1,888,499	2,078,499	190,000	10.1
• 사업수입	439,708	480,208	40,500	9.2
• 징수교부금수입	2,680,000	2,718,400	38,400	1.4
• 이자수입	8,935,001	8,935,001	-	-
- 임시적세외수입	50,816,966	61,940,616	11,123,650	21.9
• 재산매각수입	1,416,912	1,416,912	-	-
• 순세계잉여금	24,524,793	24,524,793	-	-
• 이월금	1,555,762	1,555,762	-	-
• 융자금원금수입	800,000	80,000	-	-
• 부담금	11,730,903	11,878,053	147,150	1.3
• 잡수입	10,680,596	21,657,096	10,976,500	102.8
• 과년도수입	108,000	108,000	-	-
○ 지방교부세	207,134,068	248,965,594	41,831,526	20.2
○ 지방양여금	117,820,986	117,820,986	-	-
○ 보조금(국고등)	346,128,788	384,592,537	38,463,749	11.1
○ 지방채	3,800,000	3,800,000	-	-
총 계	992,764,405	1,085,038,230	92,273,825	9.3

200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 지역경제활성화, 지방채무상환 등 현안사업 추진과 국고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국가지원 사업비 조정으로 당초예산 대비 9.3% 증가한 1조 850억 3,823만원의 규모로 편성 됨.
- 기능별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은
 - 일반행정비는 3.3% 증가한 1,732억 1,930만원
 - 사회개발비는 6.9% 증가한 3,342억 8,766만 6천원
 - 경제개발비는 14.8% 증가한 4,362억 5,223만 2천원
 - 민방위비는 4.3% 증가한 434억 5,963만 6천원
 - 지원 및 기타경비는 7.8% 증가한 978억 1,939만 6천원임.
-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교육및문화비 18.7%,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15.1%, 농수산개발비 15.2%, 지역경제개발비 35.8%, 교통관리비 69.1%, 지방채상환 59.9%가 각각 증가 하였고, 민방위관리비는 0.1% 감소하였으며 성질별 예산 및 기능별 예산내역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기록된 <표2> 및 <표3> 과 같음.

〈표2〉 일반회계 품목별·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장 관 별	기정예산		제2회추경		증 감 율	
		%		%	금 액	%
합 계	992,764,405	100.0	1,085,038,230	100.0	92,273,825	9.3
100 인 건 비	59,991,403	6.0	58,983,537	5.4	△1,007,866	△1.7
101 인 건 비	59,991,403	6.0	58,983,537	5.4	△1,007,866	△1.7
200 물 건 비	53,023,091	5.3	53,570,720	4.9	547,629	1.0
201 일반운영비	14,780,175	1.5	15,447,635	1.4	667,460	4.5
202 여 비	2,998,731	0.3	3,080,091	0.3	81,360	2.7
203 업무추진비	8,954,385	0.9	9,071,816	0.8	117,431	1.3
204 복리후생비	17,113,910	1.7	16,844,698	1.5	△269,212	△1.6
205 의 회 비	1,046,135	0.1	1,068,790	0.1	22,655	2.2
206 재 료 비	3,399,593	0.3	3,172,496	0.3	△227,097	△6.7
207 연구개발비	4,730,162	0.5	4,885,194	0.5	155,032	3.3
300 이 전 경 비	284,773,385	28.7	292,835,539	27.0	8,062,154	2.8
301 일반보상금	4,304,573	0.4	4,834,793	0.5	530,220	12.3
302 이주및재해보상금	-	-	600	-	600	-
303 포 상 금	1,441,086	0.2	1,352,086	0.1	△89,000	△6.2
304 연금부담금등	11,099,755	1.1	11,131,483	1.0	31,728	0.3
305 배 상 금	8,300	-	8,300	-	-	-
306 출 연 금	1,304,560	0.1	5,117,382	0.5	3,812,822	292.3
307 민 간 이 전	20,157,398	2.0	22,027,764	2.0	1,870,366	9.3
308 자치단체이전	240,080,263	24.2	241,985,681	22.3	1,905,418	0.8
310 해 외 이 전	5,000	-	5,000	-	-	-
311 차입금이자	6,372,450	0.7	6,372,450	0.6	-	-
400 자 본 지 출	470,130,211	47.4	533,743,272	49.2	63,613,061	13.5
401 시설및시설부대비	160,019,940	16.1	172,035,614	15.8	12,015,674	7.5
402 민간자본이전	13,305,597	1.4	15,067,243	1.4	1,761,646	13.2
403 자치단체자본이전	288,264,467	29.1	335,916,462	31.0	47,651,995	16.5
404 공기업자본전출금	1,290,000	0.1	1,380,000	0.1	90,000	7.0
405 자산취득비	7,250,207	0.7	9,343,953	0.9	2,093,746	28.9

예산결산특위제2차부록

(단위:천원)

(단위:천원)

장 관 별	기정예산		제2회추경		증 감 율	
		%		%	금 액	%
500 용 자 및 출 자	2,434,000	0.2	2,487,000	0.2	53,000	2.2
501 용 자 금	2,434,000	0.2	2,487,000	0.2	53,000	2.2
600 보 전 재 원	3,641,000	0.4	9,641,000	0.9	6,000,000	164.8
601 차입금원금	3,641,000	0.4	9,641,000	0.9	6,000,000	164.8
700 내 부 거 래	106,021,118	10.7	120,295,696	11.1	14,274,578	13.5
701 기타회계전출금	9,792,875	1.0	14,124,582	1.3	4,331,707	44.2
702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84,981,243	8.6	84,924,114	7.8	△57,129	△0.1
705 기타내부거래	11,247,000	1.1	21,247,000	2.0	10,000,000	88.9
800 예 비 비	12,750,197	1.3	13,481,466	1.3	731,269	5.7
801 예 비 비	10,797,107	1.1	11,513,483	1.1	716,374	6.6
802 반환금기타	1,953,088	0.2	1,967,983	0.2	14,895	0.8

〈표3〉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장 관 별	기정예산		제2회추경		증 감 율	
		%		%	금 액	%
합 계	992,764,405	100	1,085,038,230	100	92,273,825	9.3
1000 일반행정비	167,724,935	16.9	173,219,300	16.0	5,494,365	3.3
1100입법및선거관계	3,926,548	0.4	3,956,203	0.4	29,655	0.8
1200일반행정비	163,798,387	16.5	169,263,097	15.6	5,464,710	3.3
2000 사회개발비	312,662,132	31.5	334,287,666	30.8	21,625,534	6.9
2100교육및문화비	31,936,793	3.2	37,922,145	3.5	5,985,352	18.7
2200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70,119,899	7.1	72,163,357	6.6	2,043,458	2.9
2300사회보장비	161,961,876	16.3	168,208,193	15.5	6,246,317	3.9
2400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48,643,564	4.9	55,993,971	5.2	7,350,407	15.1
3000 경제개발비	379,947,113	38.3	436,252,232	40.2	56,305,119	14.8
3100농수산개발비	154,971,245	15.6	178,509,027	16.4	23,537,782	15.2
3200지역및경제개발비	32,582,463	3.3	44,242,135	4.1	11,659,672	35.8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190,435,979	19.2	210,191,758	19.4	19,755,779	10.4
3400교통관리비	1,957,426	0.2	3,309,312	0.3	1,351,886	69.1
4000 민방위비	41,658,098	4.2	43,459,636	4.0	1,801,538	4.3
4100민방위관리비	1,678,536	0.2	1,676,286	0.1	△2,250	△0.1
4200소방관리비	39,979,562	4.0	41,783,350	3.9	1,803,788	4.5
5000 지원및기타경비	90,772,127	9.1	97,819,396	9.0	7,047,269	7.8
5100지방채상환	10,013,450	1.0	16,013,450	1.5	6,000,000	59.9
5200제지출금	1,953,088	0.2	1,967,983	0.2	14,895	0.8
5300교부금	68,008,480	6.8	68,324,480	6.3	316,000	0.5
5400예비비	10,797,109	1.1	11,513,483	1.0	716,374	6.6

다.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액기준으로 당초예산보다 31.9%인 814억 9,274만 9천원 증가한 3,367억 8,408만원으로 편성됨.

-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자금정산결과 이월금 및 2001년도 공채매출 수입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33.1%인 543억 7,394만 3천원이 증가한 2,185억 348만 5천원으로 편성
- 「충북과학기술대학운영특별회계」는 특수영역프로그램개발지원 및 실험실습실 기자재, 장비구입비 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22.8% 증가한 49억 7,264만 9천원으로 편성
- 의료보호사업 충당을 위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시군결산 반환금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증가로 당초예산 대비 57.4% 증가한 718억 3,003만 2천원으로 편성

※ 세부내역 <표4> 참조

〈표4〉 2001년도 제2회 충청북도특별회계 예산안

(단위:천원, %)

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계				비고
	기정예산	제2회 추경	증(△)감	증감율	
○ 공기업특별회계	192,861,263	247,235,206	54,373,943	28.2	
- 공영개발	28,731,721	28,731,721	0	-	
- 지역개발기금	164,129,542	218,503,485	54,373,943	33.1	
○ 기타특별회계	62,430,068	89,548,874	27,118,806	43.4	
- 충북과학대학운영	4,049,104	4,972,649	923,545	22.8	
- 의료보호기금	45,634,771	71,830,032	26,195,261	57.4	
- 농어촌소득개발기금	10,260,193	10,260,193	-	-	
-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	2,486,000	2,486,000	-	-	

3. 地方債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지역 개발공채 발행 126억원을 계상

Ⅲ. 檢討意見

(전문위원 : 김영만)

200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세입예산

가. 금번 추경예산에 지방세 세입예산의 증감 계상은 하지 않았으나, 세계경제의 침체, 미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테러 참사, 국내 경기의 불황 등으로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나. 금년도에 3회에 걸친 금리 인하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등의 차질이 예상되는 바 각종 기금, 보관금 등의 이자세입을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다. 기채 또는 차입 당시의 약정 이율이 현재의 시장금리 보다 높다면 원금을 조기 상환하고 금리가 낮은 자금을 다시 차입하는 재원대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며

라. 도비 또는 기금융자지원 사업중 금리차액을 보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지 객관적인 정밀분석을 실시 시책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그리고 중앙지원 예산사업이라도 “지원해 준다고 모두 수용할 것이 아니라” 각종회관 등 공공건물 시설 지원예산과

같이 완공후 막대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의 추가소요로 지방비 부담을 초래할 사업예산은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 다른 사업예산으로 전환 지원되도록 하여야 하고,

바. 법률상, 제도상, 중앙부처의 행정지침상의 문제로 인하여 「일」 「시설」 「재정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서 과태료, 범칙금 등 재정세입은 국고로 전액 귀속되거나,

주민의 부담과 피해에 비하여 지원 받는 예산은 타시도에 비하여 저조한 댐관련 지원예산 등의 중앙부처 예산배분 방식은 획기적으로 시정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 국가시책 세입예산이라도 주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행상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되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세출예산

가. 예산과목 설정 및 사업비 과대계상

- 일부부서의 경우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에 예산과목 설정을 잘못하여 사업추진을 못하고 금회 추경에 과목경정 요구하거나,

단위사업비중 일부 세부사업 예산을 과대계상 다른 세부사업 예산으로 재원대체하는 식의 예산계상은 사업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음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시설비, 연구개발비 → 자산취득비

- 금회추경예산 요구액중 “성립전 집행예산”은 없는지
- 금년도 당초예산 또는 1회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 예산중 금회 추경예산에 재계상 요구한 예산은 없는지, 있다면 그 당위성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투자시기 및 공기부족

-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수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업무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비등은 재정상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초 또는 늦어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여야 업무능률 향상은 물론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음에도 사업기간이 3개월 정도 남지 않는 추경예산에 신규로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 금년내 완공목표인 각종 재해복구사업, 건설사업은 행사가 많은 10월, 동절기 공사중지명령기간을 감안하면 금회 추경에 예산의 승인을 받더라도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사고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다. 기관단체, 업체, 행사지원 예산의 증가

- 금회 추경예산요구액 중 기관, 단체, 업체, 행사지원 예산은 무려 30여건에 달하며
- 이중 일부지원예산은 지원의 타당성 내지 그 효율성이 의문이며
- 또한 일부 행사지원 예산은 국내외 경제의 어려운 정황을 잇고 과다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라. 예산지원의 형평성

- 금회 추경예산에 증평출장소는 택시 132대, 화물 532대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 6,578만 9천원을 계상하고
- 건설교통국에서는 10개시군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651백만원, 시군비 1,519백만원, 국비 2,170백만원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계상 요구하고, 국비지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시군에서 우선 예산확보 지원하면 “내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한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 이 사업은 증평출장소와 같이 예산지원을 한다면 향후 도내 모든 “택시”와 “화물차량”에 대하여도 예산지원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 건설교통부에서 약속한 지원예산이 “국회”에서 과연 통과 될 것인지, 통과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책이 유지될지

- 또한 서비스 개선없이 교통요금만 인상하여 왔다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 사업을 안다면 과연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마. 주요경상경비

- 민간인 및 민간인단체 시상금, 민간인 해외여비, 국외여비도본청의 공공요금(전화요금) 공무원 교육원의 전기요금 및 냉난방 연료비 등 경상경비를 증액 요구한 바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 전기요금, 냉난방 연료비, 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증액요인은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절전, 절수의식이 가장 문제이겠지만 시설 및 시스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음으로 현재의 시설, 기자재를 절전, 절수, 절연시스템으로 개선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바. 법령개정에 따른 지방비부담

- 2001년도 당초예산에 소방관 피복비는 1인당 61,110원을 계상하였으나
- 금회추경에는 1인당 피복비를 623,120원으로 무려 10배에 가까운 단가를 적용 3억원을 증액 요구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 기존의 소방관 복제가 무엇이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소방관 복제변경 사유는 무엇이며

- 소방관 복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복제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은 국가에서 마땅히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 각시도 소방본부가 연대하여 소방관 복제변경에 따른 예산을 지원 받을 계획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사. 시의 적절한 예산조치

- 공무원 제안 모집결과 최우수 제안을 특허 출원까지 연계한 저수조 자동청소장소 특허출원비 예산계상은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 차입당시보다 이자율이 낮은 현재의 금융시장의 장세를 판단 차입금 원금 60억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아.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안

- 종자보급소 도 편입(14명)에 따른 향후 국고지원 전망
- 금회 추경에 계상한 지역개발공채 126억원에 대한 향후 상환 이자율 적용과 예비비 54,374,943천원 증액에 따른 유희자금 처리대책
-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의 문제점
-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수해 상습지 개선 및 지방도 정비를 위한 채무부담사업 200억원에 대한 예산조치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 바이오엑스포사업 추진 사업비 조달 및 운영상의 문제점
- 대청호특별대책 지역관리 특별회계 예산중 환경기초 시설 운영비 49,208천원 감액 배경
-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이자와 차입금상환 이자율과 이차 보전관련 사안
- 식품진흥기금 경영진단사업비(18백만원) 감액
-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교량점검기중기 7억원의 집행 상황과
금회 추경에 요구한 교량정밀점검사업비(1억원)
제설기, 용접발전기, 굴삭기, 덤프트럭 등 고가장비 구입의 필요성과 활용계획 등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